

행 정 안 전 부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방형 공공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 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차관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디지털서비스개방담당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 중 1명(4급 1명)은 행정안전부 5급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한편,

현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인력 11명(7급 10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9월 30일에서 2022년 9월 30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 기정예산으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 00. ~ 6.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	·	
·	·	·	
행정주사	<u>87</u>	<u>88</u>	+1
·	·	·	
·	·	·	

행정안전부령 제 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디지털서비스개방담당관)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차관 밑에 디지털서비스개방담당관 1명을 둔다.

② 디지털서비스개방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디지털서비스개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위한 제도의 연구·개선
2.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위한 공통 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서비스 개방 시범사업 추진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서비스 개방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서비스 개방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제19조제10항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제49조제1항 단서 중 “13명(행정주사 3명)”을 “15명(전산사무관 1명, 행정주사 4명)”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609”를 “1,611”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607”을 “1,609”로 하며, 일반직 계 “1,577”을 “1,57

9”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2”를 “63”으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6”을 “25”로, 전산사무관 “32”를 “33”으로, 행정주사 “87”을 “88”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7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2020년 9월 30일” 및 “2020년 10월 1일”을 각각 “2022년 9월 30일” 및 “2022년 10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서비스개발담당관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은 2022년 5월 31일 까지 존속하며, 2022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2명(전산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의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단서 및 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09</u>	<u>1,611</u>	+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1,607</u>	<u>1,609</u>	+2
·	·	·	
·	·	·	
일반직 계	<u>1,577</u>	<u>1,579</u>	+2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62</u>	<u>63</u>	+1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26</u>	<u>25</u>	-1
·	·	·	
·	·	·	
전산사무관	<u>32</u>	<u>33</u>	+1

신·구조문대비표

연구사 2명은 2020년 9월 30일	-----2022년 10월 1
까지 존속하며, 2020년 10월 1	일-----
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	-----
원은 별표 4의2의 행정서기 또	-----
는 사서서기 1명, 행정서기보 1	-----
명으로 본다.	-----.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④ -----
별표 5의2의 행정주사보·공업	-----
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	-----
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또는	-----
시설주사보 1명은 2020년 9월	-----2022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0년 10	30일-----2022년 10
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월 1일-----
정원은 별표 5의2의 행정서기·	-----
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	-----
서기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	-----
서기 1명으로 본다.	-----.
⑤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⑤ -----
별표 6의2의 행정주사보 1명은	-----
2020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9월 30일-----
2020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2022년 10월 1일-----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
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	-----.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2(디지털서비스개방담당관)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차관 밑에 디지털서비스개방담당관 1명을 둔다. ② 디지털서비스개방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디지털서비스개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위한 제도의 연구·개선 2.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위한 공통 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서비스 개방 시범사업 추진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서비스 개방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서비스 개방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제19조(재난관리실) ① ~ ⑨ (생)	제19조(재난관리실) ① ~ ⑨ (현)

략)	행과 같음)
⑩ 기후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9. (생략)	8. (현행 제9호와 같음)
11. ~ 14. (생략)	9. ~ 12. (현행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⑪ ~ ⑭ (생략)	⑪ ~ ⑭ (현행과 같음)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13명(행정주사 3명, 시설주사보 1명, 행정서기 7명, 전산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15명(전산사무관 1명, 행정주사 4명,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행정안전부령 제7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행정안전부령 제7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부칙	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2의 행정주사보 2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운전서기 1명은 2020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0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 ----- ----- ----- ----- ----- -----2022년 9월 30일----- -----2022년 10월 1일----- ----- ----- ----- ----- -----.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주사보 2명은 2020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0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② ----- ----- 2022년 9월 30일----- 2022년 10월 1일----- ----- ----- -----.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학예연구사 또는 기록	③ ----- ----- -----2022년 9월 30일-----